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연월일 : 2004. 1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안 제2조)
- 나. 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구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함 (안 제3조)
- 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사업비용은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함 (안 제5조)
- 라. 기금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또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등으로 함 (안 제6조)

마. 기금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는 경우 자활공동체당 7천 만원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5조
-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1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

- 입법예고실시(2004. 11. 10~11. 30)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 보조금
2.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하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단, 사업비용은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 기관 ·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5.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 기관 · 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 기관 · 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사무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복지사업과장
3. 기금출납원 : 자활의료지원팀장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